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구직자 취업촉진 및
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청년 연령기준 개선,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부정행위 등에 따른 반환금·추가징수금에 대한 충당 근거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610호, 2023. 8. 8. 공포, 2024. 2. 9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(안 제2조)

- 1)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, 청년 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- 2) 이에 청년연령시 산입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함

나.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(안 제9조)

- 1) 1인가구 중위소득 60%(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*)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
 -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프로그램의 참여로 발생한 소득분은 구직촉진

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시 제외(3회 이상 지급정지시 취업지원 중단)

* 1인가구 중위소득 60%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기준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 적용
(부양가족 추가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)

2) 1인가구 중위소득 60%(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)에서 국민
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
지급

* 단,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

다. 구직촉진수당등의 총당 한도 및 절차(안 제12조의 2 신설)
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·추가징수금을 납부해
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
충당하도록 규정

2) 과오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해서는 납부자 서면 동의하에 구
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

라. 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(안 제16조 제4항)

1)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
세부적으로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범위 내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(3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.

1. 「병역법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
2. 「병역법」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
3. 「병역법」 제23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
4. 「병역법」 제30조 및 제4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
5. 「병역법」 제39조 및 제42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
6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
7. 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른 장교, 부사관, 준사관의 복무기간

제3조제3항 단서 중 “18세 이상 34세 이하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

의 연령요건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란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에서”를 “이란”으로, “제외한 것을 말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한다. 단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보다 적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액수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이하인 경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득이 1

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(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가 이보다 더 높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해당 기준금액에서 제1항에 따른 소득액을 차감한 액수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. 단, 감액한 지급액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반환명령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금·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제28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해당 반환금·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.

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5조제4항”을 “법 제35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법 제35조제5항제5호”를 “법 제35조제6항제5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법 제35조제5항”을 “법 제3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구직촉진수당등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은행법」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
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3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4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
5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새마을금고
6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 격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 격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”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복무기간 범위 내 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(3년을 한도로 한다)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.</u> <u>1. 「병역법」 제18조 및 제19 조에 따른 현역의 복무기간</u> <u>2. 「병역법」 제23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</u> <u>3. 「병역법」 제23조의2에 따 른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 간</u> <u>4. 「병역법」 제30조 및 제42 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 무기간</u> <u>5. 「병역법」 제39조 및 제42 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</u> <u>6.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 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 19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</u>

제3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)

① · ② (생략)

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4억원을 말한다. 다만,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신청인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9조(수급자의 소득발생 신고)

법 제21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”이란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
<신 설>

1. (생략)

2.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구직
촉진수당의 지급주기 중에 해

복무기간

7. 「군인사법」 제7조에 따른
장교, 부사관, 준사관의 복무
기간

제3조(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)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. ----- 법 제6조제
1항제3호 단서의 연령요건-----

----- 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급자의 소득발생 신고)

① _____

_____이란 _____

-- 말한다.

1. 제2조제4항 각 호의 소득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<삭 제>

당 수급자에게 발생한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합계액(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만 해당한다)

<신 설>

<신 설>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정지한다. 단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보다 적은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기준으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액수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에는 산입하

<신 설>

지 아니한다.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(구직촉진수당의 월단위 지급액의 2배가 이보다 더 높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해당 기준금액에서 제1항에 따른 소득액을 차감한 액수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. 단, 감액한 지급액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12조의2(반환명령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금·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 제28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

제16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~ ③ (생략)
<신설>

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해당 반환금·추가징수금에 충당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등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하기로 서면 동의하면 그 동의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.

제16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
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구직촉진수당등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은행법」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<u>법 제35조 제4항</u>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·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. 1. ~ 4. (생략) ⑤ <u>법 제35조제5항제5호</u>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<u>법 제33조제2항</u>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. ⑥ <u>법 제35조제5항</u>에 따른 시정 요구,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.	2. 「<u>농업협동조합법</u>」에 따른 <u>농협은행</u> 3. 「<u>수산업협동조합법</u>」에 따른 <u>수협은행</u> 4. 「<u>상호저축은행법</u>」에 따른 <u>상호저축은행</u> 5. 「<u>새마을금고법</u>」에 따른 <u>새마을금고</u> 6. 「<u>신용협동조합법</u>」에 따른 <u>신용협동조합</u> ⑤ ----- <u>법 제35조 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⑥ <u>법 제35조제6항제5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⑦ <u>법 제35조제7항</u>----- ----- ---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	
연 락 처	(044) 202 - 7193